

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 선하지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

「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50호(2020. 2. 24)」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된 「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
- 나. 명칭 : 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
- 다. 사업시행자 :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
- 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-1, 2층(오류동)
- 마. 사업의 내용
 - 사업 면적 : 2,465㎡
 - 사업 구간 : 154kv 경서-양촌 NO.16 ~ NO.19
 - 사업 규모 : C/H 철탑 2기, 송전선로 지중화(L=1,425m)
 - 사업 기간 :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~ 2022. 10. 31(준공예정일)

2. 보상대상 토지명세

보상대상 토지명세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,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.

3. 보상계획 열람장소 및 기간 등

- 가. 열람장소
 - 「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」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-1, 2층(오류동)
(전화 : 032-567-3566, 팩스 : 032-567-3565)
 -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(전화 : 032-560-5773)

- 나. 열람기간 : 2022년 3월 31일 ~ 4월 15일 (15일간)
(열람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)

다. 이의신청 :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대상 토지조서(명세)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「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」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보상시기 : 2022년 5월 예정

개인별 보상대상 토지조서(명세)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액 산정

보상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(다만, 관할 시장과 물건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물건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
나. 보상금 지급 : 보상계약체결 후 해당 토지에 「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」 또는 「한국전력공사」 등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
다. 감정평가업자 추천

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
6. 기타사항

가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나. 기타 보상관련 공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(도메인 www.gumdan3.com)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「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」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31일



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

